

#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8. 5. 22)

상정, 심사, 수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산정보과장 정 원 배

### 가. 제안이유

마포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9. 10. 11.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는 제정이후 사실상 정비가 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1)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시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서울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구의 시행계획 중 서울시가 조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의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의2 제1항내지 제2항)

2)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과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기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유·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다.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조정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상향되어 있는 직위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 라. 정보화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이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안 제20조제1항내지 제2항)
- 마.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 바. 주민 정보화교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 사. 지역정보화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 아. 정보화교육 이수자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또는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와 성적 우수자에 대해 시상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마포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3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약칭은 동 조례에서 약칭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안 제6조의2제1호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마포구민”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마포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동항 제5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구의원을 동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으로 이에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